

등록번호	물류산업과-5338
등록일자	2022. 12. 27.
결재일자	2022. 12. 27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사무관대우	행정사무관	물류산업과장
		전결 2022. 12. 27.

<p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(안) 수정</p>	주요 검토사항	
	정책 중요도	보통
	민원·갈등 가능성	보통
	기관간 이견가능성	보통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보통
	서민생활 관련성	보통

※ 택배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.

물류산업과

화물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규정 개정(안) 수정

I. 수정배경

- 택배 집·배송 차량의 최대적재량 상향(1.5톤→2.5톤)을 위한 화물법 시행령 및 대폐차 규정을 개정 진행하였으나,
 - 톤급 범위 설정과 관련한 법안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, 이는 업계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음
 - * (입법의견) 현재 최대적재량 1.5톤이상 2.5톤 미만 생산 차량 없음(통물협회, 대신택배)

II. 수정내용

- 택배 집·배송차량의 톤급 상향 범위 문구 수정

법령(규정)	당초 법안	수정 법안	비고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	○ 제52조의3제1항제4호가목 단서 신설 --- 2.5톤 미만---	○ 제52조의3제1항제4호가목 단서 신설 --- 2.5톤이하---	
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	○ 제6조제4항 단서신설 --- 2.5톤 미만--- ○ 제7조제3항 단서신설 --- 2.5톤 미만---	○ 제6조제4항 단서신설 --- 2.5톤 이하--- ○ 제7조제3항 단서신설 --- 2.5톤 이하---	

III. 향후 추진 계획

- 규제 협의 및 (재)입법예고 : '23. 1월
- 법제처심사 및 개정·공포 : '23. 2월

붙임 화물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규정 수정법안 각1부. 끝.